

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의안 번호	171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 및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·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조항 불일치 사항 반영(안 제2조 및 제7조)

나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4월 16일 ~ 5월 6일 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장애인복지과

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법 제5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55조”를 “법 제53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법 제53조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센터의 운영)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 윤 한
	팀장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팀장 김 선 두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선 아 (790-553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활동보조서비스“란 <u>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</u>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</p> <p>5. “활동보조인“이란 <u>법 제55조</u>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 <u>법 제53조</u>----- -----.</p> <p>5.----- <u>법 제53조</u>----- -----.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) 시장은 <u>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</u>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) ----- <u>법 제53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센터의 운영)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센터의 동료 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센터의 운영)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 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장애인복지법

제53조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4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29.>

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4.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11.1.4.>

[제목개정 2011.1.4.]

제56조(장애동료간 상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35조(결손처분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15.>

[본조신설 2012.7.10.]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39조의2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)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이하 “자립생활센터“라 한다)의 의사결정,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,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2.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
3.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가.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
나.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 사업

다.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·증진

라.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

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,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.

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, 사업 수행, 재정 확보,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4.7.]